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4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2015.1.28.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(시행 2015.5.29.)으로 임대주택 확보 의무비율의 완화가 예상되어,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,
-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함.

2. 주요내용

-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정함.(안 제7조)
-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함.(안 제12조의3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
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

제12조의3제1항 중 “법 제16조의2제1항에”를 “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”로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 영 제12조제12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”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을 말한다.	제7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립 세 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(200 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 획으로 한정한다)	6.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임 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
7. ~ 10. (생략)	7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3(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) ① 구청장 등은 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(이 조 례 시행 이전 승인 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4에서 같 다)가 해산된 경우 추진위원회에 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	제12조의3(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) ① -----법 제16 조의2제1항제1호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⑨ (생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